[별지 제5호 서식]

약식영향진단 시행 요청서 (제29조 제1항)

<table>
<tr><td rowspan="2">대상국가유산</td><td>종 별</td><td></td><td>명 칭</td><td></td></tr>
<tr><td>소재지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허용기준</td><td>구 역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신청인</td><td>성 명</td><td></td><td colspan="2">생년월일</td></tr>
<tr><td>주 소</td><td colspan="3">(전화번호: /전자우편주소:)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신청사항</td><td>위 치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내 용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사 유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9">행위유형</td><td>[ ]</td><td colspan="3">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·증설하는 행위</td></tr>
<tr><td>[ ]</td><td colspan="3">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</td></tr>
<tr><td>[ ]</td><td colspan="3">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·진동·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·화학물질·먼지·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</td></tr>
<tr><td>[ ]</td><td colspan="3">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</td></tr>
<tr><td>[ ]</td><td colspan="3">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·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</td></tr>
<tr><td>[ ]</td><td colspan="3">국가지정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</td></tr>
<tr><td>[ ]</td><td colspan="3">국가지정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</td></tr>
<tr><td>[ ]</td><td colspan="3">그 밖에 국가지정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유산의 역사적·예술적·학술적·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</td></tr>
<tr><td colspan="5">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약식영향진단을 신청합니다.</td></tr>
<tr><td>첨부서류</td><td colspan="4">1. 행위 계획서
2. 다음 각 호 관련 도면.
가. 건설공사 등 땅깎기·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·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: 배치도·평면도·입면도·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
3. 현장 사진</td></tr>
<tr><td colspan="5">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</td></tr>
</table>